



## 서울남부지방법원

### 판 결

사 건 2018고단6538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세희(기소), 이선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감우 담당변호사 김계환  
판 결 선 고 2021. 9. 9.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B'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8.경 'C' 대표인 피해자 D가 저작권 등록을 한 E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구매하지 않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한 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B'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무단으로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



도록 하거나, 'B'가 취급하는 홈페이지 솔루션 프로그램에 첨부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프로그램 구매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와 같이 E 프로그램, F 프로그램, G 프로그램을 각각 위 'B'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무단으로 업로드 하여 위 솔루션 프로그램 구매자 등이 위 각 프로그램 및 H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2011. 8. 18.경부터 2019. 9. 24.경까지 위 각 프로그램을 복제, 공중송신 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sup>1)</sup>.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및 제11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한 판매내역, 저작권등록증

##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솔루션 프로그램을 구매한 사람들이 7,619회에 걸쳐 이를 다운로드 받았다고 하여 이를 범죄일람표로 특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판시 각 I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여 프로그램 구매자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덩으로써 복제 및 공중송신의 저작권법위반 범죄가 성립하고, 이후 실제로 그들이 다운로드 받은 횟수는 범죄 성립과는 관계없는 양형자료(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자료)에 불과하므로, 범죄사실에서 이를 특정하지 않기로 한다(피고인과 변호인이 프로그램 구매자들이 다운로드 받은 횟수를 오랜 기간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그 주장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이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이를 일일이 특정하기 위해 심리를 지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오랫동안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영업에 이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나 피해자가 그로 인해 입은 손해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11-02

## 범 죄 일 랑 표

순번	범행일시(게시일시)	침해저작물	범행방법
1	2011. 8. 18.경 ~ 2013. 9. 22.경	E	‘B’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무단으로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복제·공중송신
2	2013. 9. 23.경 ~ 2014. 3. 24.경	F	
3	2014. 3. 25.경 ~ 2019. 9. 24.경	G	